체류 신분에 상관없이
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:

- 교육 기간을 포함한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권리
- 최저 임금 이상을 받고, 초과 근무 수당을 받고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을 권리(일반적으로 매주 또는 격주)
- 귀하의 임금 공제액을 알고 사전 서면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
- 차별, 성희롱 및 학대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
- 보복의 두려움 없이 뉴욕주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

강제 노동은 범죄입니다!
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일 수 있습니다:

- 빚을 갚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함
- 고용주가 여권이나 신분증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함
- 그린 카드나 돈과 같은 받지 못하는 혜택을 약속함
- 일하지 않으면 이민 감독관이나 경찰을 부를 것이라고 위협함
- 귀하나 귀하의 가족이 해를 입을 것이라고 위협함
- 실제로 해를 입거나 가족이 해를 입음

자신을 보호하십시오!

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관하십시오:

- 일한 날짜와 시간
-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
- 직장에서 중요한 사건(부상, 위협 또는 갈등)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, 그리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

귀하의 권리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National Human Trafficking 24시간 핫라인(**888.373.7888**) 또는 DIPA 핫라인 (**877.466.9757**)으로 전화하십시오.

trafficking@labor.ny.gov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**917.692.7215**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.

NEW YORK STATE OF OPPORTUNITY. | **Department of Labor**
Division of Immigrant Policies & Affairs

888.469.7365 | **www.labor.ny.gov** | @nyslabor

뉴욕주 노동부는 기회균등주의 고용주/프로그램입니다.
장애인의 요청 시 보조 기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P746.3 K (1/19)